

장학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14장에 의거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9.)

제 2 조 (적용범위) 장학관리는 따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장 학 위 원 회

제 3 조 (목적)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재무처장, 입학처장 및 단과대학장과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1, 2012. 11. 1, 2015. 5. 1, 2020. 1. 28., 2020. 9. 8.)

제 5 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

1.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기준액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4.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장학금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 조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나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의2 (장학사정관제) ① 맞춤형 장학정보 제공과 상담 및 면학지원을 위하여 장학사정관제를 운영한다. (신설 2012. 11. 1)

- ② 장학사정관은 학생처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2. 11. 1)
- ③ 장학사정관은 교내외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

제 3 장 장 학 금 지 급

제 7 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생중 학업성적 우수자
3.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개정 2021. 3 .9.)
4. 본교 전임교원, 정규직원(무기 계약직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개정 2021. 3 .9., 2023. 3. 1)
5. 본교 전임교원, 정규직원(무기 계약직 포함)으로써 재직 중 사망한 자의 직계자녀(개정 2021. 3 .9., 2023. 3. 1)
6. 국가유공자 등 법률규정에 명시된 자
7. 근로, 봉사 및 간부학생 (개정 2012. 11. 1)
8. 국가와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및 직계자녀

9. 각 학과·학부 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개정 2021. 3 .9.)
10. 신앙심이 독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1. 산학협동 공로자 및 직계자녀
12. 특별한 선행이 있는 자
13.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
14. 체육특기자로서 전국규모대회에서 수상한 자 (개정 2012. 11. 1)
15. 기타 학생처장 또는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 11. 1)
16.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학생을 추가 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2. 11. 1)

제 8 조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 2015. 3. 2, 2016. 3. 2. 2017. 3. 1, 2018. 3. 1, 2019. 3. 1, 2020. 1. 28., 2020. 3. 1., 2022. 3. 1., 2023. 3. 1.)

1. ~ 14. <삭제 2012. 11. 1>

②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1. 28., 2020. 3. 1.)

제 8조의 2 (기타장학)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

제 8조의 3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해당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1. 1)

제 9 조 (지급정지 및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8)

1. 미등록 휴학·자퇴 및 제적된 자(개정 2021. 3 .9.)
2. 직전학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학칙을 위배하여 징계처벌을 받은 학생 (개정 2019.10.28)
4. <삭제 2012. 11. 1>
5.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단, 총장장학금은 제외) (개정 2012. 11. 1)
6. <삭제 2012. 11. 1>
7. <삭제 2021. 3 .9.>
8.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달성에 희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였을 때
9. 1학기 이상 연속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수혜기간동안 기준 성적 미달시(별표기준) (신설 2012. 11. 1, 개정 2013. 10. 1)

제10조 (장학금지급원칙) 장학금 지급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기간 : 장학금 지급기간은 1학기로 한다.
2. 지급액 :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3. <삭제 2012. 11. 1>
4. 지급한도 : 장학금의 지급한도는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1. 3. 1, 2012. 11. 1., 2021. 3 .9.)
5.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은 현금 또는 은행 계좌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6. <삭제 2012. 11. 1>
7. 1학기 이상 연속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수혜기간동안 교내 타 성적장학과 이중수혜 불가하며, 상위장학(수혜금액 상위)만 수혜가능하고, 연속장학 횟수에 포함된다.(신설 2012. 11. 1, 개정 2013. 10. 1, 2016. 3. 2., 2021. 3 .9.)
8. 총장 A장학금 추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총장 B장학금 추천 배정인원 1명 추가 배정 한다. (신설 2015. 3. 2)

9. 동점자 처리 기준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3. 2)

제11조 (장학금의 환수)

-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가 학적변동 등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 기준에 의거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환수한다.
 - 1.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단, 생활지원 또는 대가성 장학금 제외)
 - 2. 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 반환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 3. 기타 반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3 .9.]

부 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

이 규정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신입생 장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의거한 연속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 3. 1)

이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

이 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거하여 기지급된 장학금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 9. 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벤처 프런티어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졸업 시 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 3. 2, 2017. 3. 1, 2019. 3. 1, 2020. 1. 28., 2020. 3. 1., 2021. 3. 1., 2022. 3. 1., 2023. 3. 1.)

1. 교내장학금: 신·편입생

장학 명칭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구분	지급 기간
총장 I	수능시험에서 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합이 6등급 이내인 자	계속지급조건: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5이상 ※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탈락 ※2회 탈락 시 장학금 지급종료	등록금 전액	등록금 범위내	4년
			도서지원비 (연간160만원)	등록금 범위외	
			생활관비 (4인실 기준)	등록금 범위외	
총장 II	수능시험에서 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합이 8등급 이내인 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0%이내	계속지급조건: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5이상 ※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탈락 ※2회 탈락 시 장학금 지급종료	수업료 50%	등록금 범위내	4년
			도서지원비 (연간80만원)	등록금 범위외	
			생활관비 (4인실 기준)	등록금 범위외	
지역 우수 인재 I	지역고등학교(충청/대전/세종) 출신자로서 우리대학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평균석차 등급이1.00-1.99인 자 (단, 국/영/수 합 55시수 이상)	1)적용전형: 학생부/면접/지역학생/실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단, 검정고시지원자 제외 2)계속지급조건: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5이상 ※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탈락 ※2회 탈락 시 장학금 지급종료	등록금 전액	등록금 범위내	4년
			도서지원비 (연간80만원)	등록금 범위외	4년
지역 우수 인재 II	지역고등학교(충청/대전/세종) 출신자로서 우리대학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평균석차 등급이2.00-2.49인 자 (단, 국/영/수 합 55시수 이상)	1)적용전형: 학생부/면접/지역학생/실기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단, 검정고시지원자 제외 2)계속지급조건: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5이상 ※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탈락 ※2회 탈락 시 장학금 지급종료	수업료 50%	등록금 범위내	4년
수시 수석	모집단위별 수석	1)적용전형: 학생부/면접/지역인재/실기 ※ 단, 검정고시 지원자 제외 2)계속지급조건: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0이상 ※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종료	수업료 50%	등록금 범위내	1년
수시 우수	모집단위별 상위 10%이내	적용전형: 학생부/면접/지역인재/실기/호서인재 ※단, 검정고시 지원자 제외	수업료 50%	등록금 범위내	1학기
정시 수석	모집단위별 수석	1)적용전형: 수능/면접/실기 2)계속지급조건: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0이상 ※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종료	수업료 50%	등록금 범위내	1년
정시 우수	모집단위별 상위 10%이내	적용전형: 수능/면접/실기	수업료 50%	등록금 범위내	1학기

장학 명칭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구분	지급 기간
체육 특기자 수석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전공별 수석	1)계속지급조건: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 3.0 이상 ※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종료	수업료 50%	등록금 범위내	1년
체육 특기자 차석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전공별 차석	-	수업료 50%	등록금 범위내	1학기
편입생 장학	편입학전형으로 선발된 자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종료	100만원	등록금 범위내	1년
편입생 장학 (협약기관)	대학 부설기관, 협약체결기관 등 협약기관에서 편입한 자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계속지급조건 미충족시 지급종료	수업료 50%	등록금 범위내	1년
재외 국민 장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자	-	정착장학금 100만원	등록금 범위내	1회
			생활관비 (4인실 기준)	등록금 범위외	4년
서해 5도 장학	서해5도 전형으로 선발된 자	-	정착장학금 100만원	등록금 범위내	1회
			생활관비 (4인실 기준)	등록금 범위외	4년

2. 교내장학금: 재학생

장학 명칭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구분	지급 기간
총장 장학	1. 총장A: 직전학기 성적 4.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배정인원: 직전학기 각 학부 및 학과 (전공)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 ※단, 편제개편 또는 모집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정이 불가능한 학과의 경우 유사학과(전신학과)와 통합하여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문화예술학부, 스포츠과학부 등 트랙으로 모집하는 학부는 필요한 경우 트랙별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미만 지급불가	수업료 전액	등록금 범위내	1학기
	2. 총장B: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수업료 50%	등록금 범위내	1학기
	3. 총장C: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수업료 20%	등록금 범위내	1학기
특별 장학	1.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자 2. 경제사정 곤란자로서 품행이 바르다고 인정되는 자 3. 기관장/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4. 기타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 시행 시 내부결재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외	1학기
봉사 장학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등에서 근로 및 봉사한 자 ※ 근로/멘토/RE:born학습(선후배사랑학습공동체)/튜터/어깨동무/채플봉사/SNS홍보단/대학홍보단/기타봉사 등	※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 시행 시 내부결재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외	1학기
글로벌 리더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 자치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직전 학기 평균평점 2.5이상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외	1학기
교직원 장학	전임교원, 정규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직전 학기 평균평점 2.0이상 2)전임교원,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가 본교 입학울 희망하는 경우 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록금 전액	등록금 범위내	4년
체육 우수 장학	1등급: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우승 입상자	1) 3개 이하 참가팀(개인) 대회의 경우 대회 규모와 관계없이 1위 입상만 인정하여 장학금 지급 2) 4개 이상 6개 이하 참가팀(개인) 대회의 경우 대회 규모와 관계없이 1위, 2위 입상만 인정하여 장학금 지급 ※ 단, 전국규모대회의 정의 및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수업료 전액	등록금 범위내	1학기
	2등급: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2위 입상자		수업료 60%	등록금 범위내	1학기
	3등급: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3위 입상자		수업료 30%	등록금 범위내	1학기
소망 장학	재학생 중 가계곤란자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0-5구간인 자 ※ 시행 시 내부결재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1학기
비전 장학	재학생 중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긴급한 경제사정으로 등록이 어려운 자	※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 시행 시 내부결재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1학기

장학 명칭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구분	지급 기간
국가 유공자 장학	법률에 규정된 보훈대상자 본인	성적과 학점에 제한 없음	등록금전액	등록금 범위내	1학기
	법률에 규정된 보훈대상자의 자녀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	등록금 전액 (교비 50%/국고 50%)		
희망 장학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등급 1급, 2급, 3급 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1학기
가족 장학	본교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 직계가족 2명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	가족 중 학부과정 학생 1인에게 지급 ※ 시행 시 내부결재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1학기
학군단 장학	학군단(ROTC) 학생 중 우수한 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 시행 시 내부결재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외	1학기
벤처 프런티어 장학	(2018학년도 이전) 재학생 중 벤처프런티어로 선발된 자	계속지급조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5이상 ※ 2학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또는 성적미달 시 다음학기 지급탈락 ※ 2회 탈락 시 장학금 지급종료 ※ 단, 벤처프런티어 운영위원회에서 구제될 경우 예외 ※ 시행 시 내부결재	등록금전액	등록금 범위내	4년
			생활관비 (전액)	등록금 범위외	4년
			해외연수비	등록금 범위외	1회
	(2019학년도부터) 재학생 중 벤처프런티어로 선발된 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벤처프런티어로 선발된 자에게는 해당 프로그램 수료 시 장학금 지급 ※ 시행 시 내부결재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일정 기간
미래인재 (국가고시) 장학	미래인재양성센터 국가고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외	일정 기간
외국인 유학생 장학	외국인 유학생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외	1학기
북한 이탈 주민 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	직전 학기 백분율 70점 이상	등록금 전액 (교비 50%/국고 50%)	등록금 범위내	4년
국제화 장학	해외연수자(어학연수, 교환학생) 및 해외봉사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외	1학기
재입학 장학	본교 재입학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1학기
취업 준비 장학	취업준비 목적으로 졸업을 연기한 자(학기초과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외	1학기

장학 명칭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구분	지급 기간
실습 조교 장학	실습조교로 선발된 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외	1학기
연구 조교 장학	연구조교로 선발된 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외	1학기
현장 실습 장학	현장실습에 선발된 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외	1학기
산학 융합 캠퍼스 장학	산학융합캠퍼스 소속학과 대상	※ 성적우수, 저소득층, 근로, 기타사유 등으로 선발된 자 ※ 산학융합캠퍼스 장학금 지급은 해당 부서의 자체선발기준에 따른다.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외	1학기
미래 융합 대학 장학	미래융합대학에 입학 및 재학 중인 자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외	1학기
CanDo 마일 리지 장학	CanDo 마일리지를 일정 수준 이상 취득한 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외	1학기
미래 인재 마일 리지 장학	고등학교 재학생 중 우리대학 고교 연계프로그램 또는 행사 등에 참여하여 마일리지를 적 립한 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외	1회
호서 동문 사랑 장학	재학생 중 부모 1인이 본교 졸업자인 경우 그 자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1회
기타 장학	학과 및 부서 등에 배정된 장 학 예산에 대해 성적우수, 저 소득, 근로, 자격증 취득, 수 상 및 기타사유 등으로 선발 된 자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외	일정 기간
재해 지원 장학금	각종 재난(대형화재, 지진, 태 풍등) 피해자	※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자 ※ 시행 시 내부결재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1학기
다전공 이수 지원 장학금	초과학기자 중 부·복수전공자 및 마이크로디그리 전공자	- 초과학기자 중 부·복수전공자 - 초과학기자 중 마이크로디그리전공자 ※ 시행 시 내부결재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내	1학기
사업단 장학금	사업단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 (별도기준)	- 해당 부서에서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시행 시 내부결재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외	1학기